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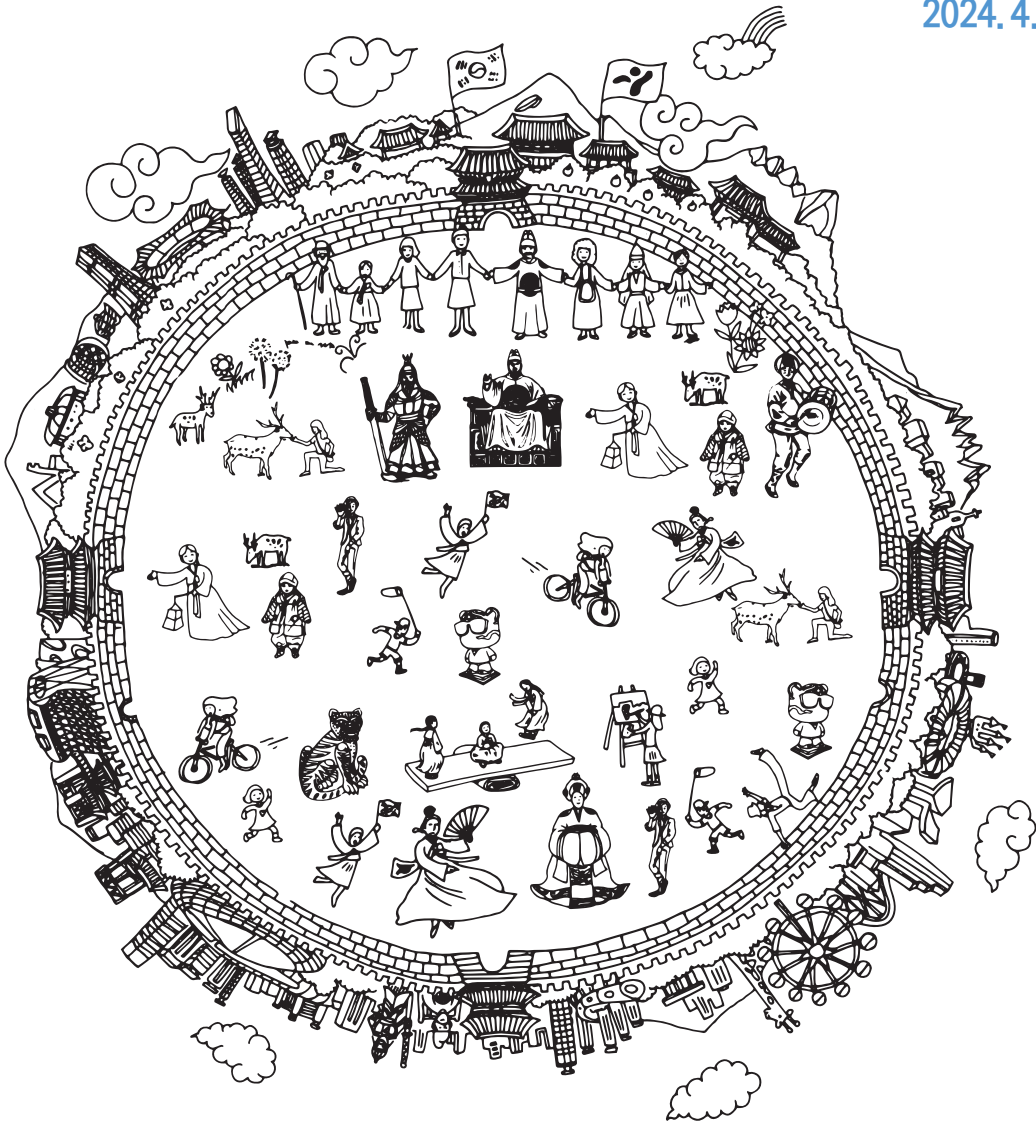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70호
2024. 4. 12.(금)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4-1137호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24-1149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제2024-1153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4
제2024-115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8
제2024-1157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2
제2024-1161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6

◆ 구 공 고

제2024-853호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토지보상)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초구)	61
------------	--	----

자치법규 등**[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37호****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규칙상의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용차량’을 ‘공무용차량’으로 개정(안 제명, 안 제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나. 차량의 구분 명확화(안 제4조)
- 다. 전용차량 교체 및 용도변경 조건 개선(안 제5조, 제8조)
- 라.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관련 감독 규정 신설(안 제14조)
- 마. 공용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규정 신설(안 제15조)
- 바. 출·퇴근 허용을 특정 공용차량(전용차량 포함)에서 해당 직무 수행자로 변경 및 허용 대상자 추가(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2133-16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총무과
- 2) 팩 스: 02-2133-1003
- 3) 이메일: top5000@seoul.go.kr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차량”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를 “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차량 배정대상 기관 등)”을 “(차량의 종류 및 배정대상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차량의”를 “이 규칙에서 정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수 업무용 승용차량”을 “특수한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용차량: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
2. 의전용차량: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
3. 일반업무용차량: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
4. 특수차량: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
5. 임시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제5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를 “규정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각 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승용자동차 중 최단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전용차량의 경우 일반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대한 승인이전” 을 “대하여 시장이 승인하기 전”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경우,” 를 “ 경우.” 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별표1” 을 “별표 1” 로, “경우,” 를 “ 경우.” 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시의” 를 “서울특별시의” 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를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등록 말소·등록” 을 “등록·말소등록” 으로,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 을 “공무용차량” 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 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로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기관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공무용차량 내부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차량관리 부서)” 를 “(차량관리부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 을 “공무용차량”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회” 를 “서울특별시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원과 차량유지관리” 를 “직원 및 차량유지 관리”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용차량의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차량관리 부서” 를 “차량관리부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용차량임” 을 “공무용차량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용차량” 을 “공무용차량” 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차량을 활용한 출·퇴근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을 “긴급구조통제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에게 배차된 차량” 을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회의의장, 서울특별시부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4. 시장이 직무상 출·퇴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6조 중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하 “직접운전차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자녀”를 “사람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영 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자동차 (전 용)	대형승용차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회의의장 • 서울특별시부시장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
승 용 자동차 (의전용)	대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시립대학교	
	중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승 용 자동차 (일반업무용)	중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강사 초빙 등 외빈을 안내하는 기관 • 도시고속도로를 담당하는 기관의 고속도로 순찰차량 • 서울특별시의회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소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승 합 자동차 (일반업무용)	대형승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중형승합차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소형승합차		※ 승합자동차(전용 및 의전용) : 승용자동차(전용 및 의전용)과 기준 동일
	경형승합차		
화 물 자동차 (일반업무용)	대형화물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		
특 수 자동차	이동수리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청소차		
	급수 및 살수차		
	트럭트렉터		
	고소작업차		
	구급차		
	진료차		
	렉카차		
	트레일러		
	점검·단속 및 순찰 등 특정 업무를 위한 차량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소방펌프차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 적용
	소방물탱크차		
	무인방수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고가차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구조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재난현장 지원차		
	행정 및 교육지원차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 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제13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종별	차 형 별	분류번호
승용차량	· 대형 승용차	가 1
	· 중형 승용차	가 2
	· 소형 승용차	가 3
	· 경형 승용차	가 4
	· 다목적 승용차	가 5
승합차량	· 대형 승합차	나 1
	· 중형 승합차	나 2
	· 소형 승합차	나 3
	· 경형 승합차	나 4
화물차량	· 대형 화물차	다 1
	· 중형 화물차	다 2
	· 소형 화물차	다 3
	· 경형 화물차	다 4
특수차량	· 이동수리차	라 1
	· 청소차	라 2
	· 급수 및 살수차	라 3
	· 트랙트렉터	라 4
	· 고소작업차	라 5
	· 구급차	라 6
	· 진료차	라 7
	· 렉카차	라 8
	· 트레일러	라 9
	· 점검·단속 및 순찰 등 특정 업무를 위한 차량	라 10
	· 소방차	라 11
	- 소방펌프차	라 11-1
	- 소방물탱크차	라 11-2
	- 무인방수차	라 11-3
	- 소방화학차	라 11-4

차종별	차 형 별	분류번호
	- 화생방 대응차 - 소방고가차 - 소형사다리차 - 재난지휘차 - 구조차 - 구급차 - 화재조사차 - 조명배연차 - 재난현장 지원차 - 행정 및 교육지원차	라 11-5 라 11-6 라 11-7 라 11-8 라 11-9 라 11-11 라 11-11 라 11-12 라 11-13 라 11-14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1」 서울아리수본부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는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 다1 - 3

「예시2」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번째 구입하는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 가2 - 1

[별지 제9호서식]

공용차량 운영 현황 공개(제15조제3항 관련)**1. 공용차량 정수 현황**

기관명	합계	전용·의전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일반업무용(승용)					일반업무용(승합용)				
소계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일반업무용(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2. 공용차량 보유 현황

기관명	구분	합계	전용·의전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합계							
	구매							
	임차							

일반업무용(승용)					일반업무용(승합용)				
소계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일반업무용(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3. 전용차량 보유 현황

번호	기관명	배정대상	차명	배기량	구입/임차	구입/임차 일자

4. 공용차량 구입 및 처분 현황(1년간)

기관명	합계		전용 · 의전용						일반업무용(승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구매												
	임차												
	처분												

일반업무용(승합용)					일반업무용(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u>	<u>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u>공용차량</u> 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무용차량</u>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u>의회</u> 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 ----- <u>서울특별시의회</u> (이하 “기관”이라 한다)-----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삭 제>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	<삭 제>

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삭 제>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
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
을 말한다.

<삭 제>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
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
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의 본
청·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
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기관-----

-----.

제4조(차량 배정대상 기관 등) 차
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

제4조(차량의 종류 및 배정대상기
관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차
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

과 같다. 다만, 의전 및 도시고속도로 순찰 등 특수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정

며, --, -----
----- 특수한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
-----.

1. 전용차량: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

2. 의전용차량: 별표 1의 배정 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

3. 일반업무용차량: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

4. 특수차량: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

5. 임시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

----- 범위-----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사무소가 분산배치된 기관으로서 분산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을 요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상응하는 사업소의 정수기준 별위내에서 배정할 수 있음.

2. (생략)

③ (생략)

<신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② (생략)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에 대한 승인이 전에 그 필요경비를 예산에 계

-----.

② ----- 규정도 -

-----.

1. -----

-----.

----- 별위-----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승용자동차 중 최단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전용차량의 경우 일반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하여 시
장이 승인하기 전-----

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⑤ (생 략)

제8조(차량의 교체)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차량의 교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경우. -----

--

2. ----- 별표 1-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
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
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이 정부 또는 시의 정책
에 따라 차량 교체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
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기관
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 친
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의 등록 및 처분) ①
~ ④ (생 략)
⑤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차량의 등록 말소·등
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
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경우.

3. ----- 서울특별
시의 -----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
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
----- 「서울특
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환
경친화적 자동차를 -----
-----.

제11조(차량의 등록 및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등록·말소
등록 -----

--- 별지 제3호서식-----
-----.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4조(지도·감독 등) ①·②
(생략)

<신설>

<신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
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
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차량관리 부서) ① 공용차
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장부의 비치) -----
----- 공무용차량-----

-----.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도·감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관의 장은 기관 차량의 의
무보험 보장기간 및 종합·정기
검사 유효기간을 공무용차량 내
부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④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0
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제2항부터 제4항까
지-----

-----.

제15조(차량관리부서) ① 공무용
차량-----

-----.

1. (생 략)

2. 시의회 - 의정담당관

3. · 4. (생 략)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직 직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차량의 사용) ① (생 략)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의회 ---

3. · 4. (현행과 같음)

② -----

----- 직원 및 차량
유지 관리-----
--.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용차량의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차
량관리부서-----
--. -----
-----.

③ (생 략)

④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의 외부에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 구조 및 수습 업무를 담당하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공무용차량임-----
-----,

-----,
-----.

⑤ -----

----- 공무용차량-----
-----,
-----.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
-----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차량을 활용한 출·퇴근을 -----
-----,
-----.

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부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2. -----

는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
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신 설>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
용)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
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직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
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제27조(차량의 운행) ① 제26조
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
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에 적
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승	대형승용차	서울특별시청	최단운행연한(「물

----- 긴급구조통제단장

3. -----

----- 사람

4. 시장이 직무상 출·퇴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
용) -----

----- 직접 운전하는 차량
(이하 “직접운전차량”이라 한
다)-----

-----.

제27조(차량의 운행) ① -----

----- 사람은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	-----	--------	-----------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용 자동 차 (전 용)		- 서울특별시회의의장 - 서울특별시부시장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u>품관리법</u> , <u>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u>	승 용 자동차 (전 용)	대형승용차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회의의장 - 서울특별시부시장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u>최단주행거리(1 2만km) 초과</u>
승 용 자동 차 (의전 용)	대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시립대학교	<u>정하여 통보하는 내용연수) 경과 및 최단주행거리(12만 km) 초과</u>	승 용 자동차 (의전용)	대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시립대학교	
	중형승용차	서울특별시 본청		중형승용차	서울특별시 본청		
승 용 자동 차 (업무 용)	중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강사 초빙 등 외빈을 안내하는 기관 - 도시고속도로를 담당하는 기관의 고속도로 순찰차량 - 서울특별시의회	최초 등록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자동차 (일반업 무용)	중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강사 초빙 등 외빈을 안내하는 기관 - 도시고속도로를 담당하는 기관의 고속도로 순찰차량 - 서울특별시의회	최초 등록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소형승용차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형승용차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경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다목적승용 차				다목적승용 차		
승 합 자동 차	대형승합차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u>최단운행연한(「물 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u>	승 합 자동차(일반업 무용)	대형승합차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u>최단운행연한(「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u>
	중형승합차		최초 등록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중형승합차		최초 등록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소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				경형승합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이상) ※ 승합자동차(전용) : 승용자동차(전용))과 기준 동일				7년 이상) ※ 승합자동차(전용 및 의전용) : 승용자동차(전용 및 의전용)과 기준 동일		
화 물 자 동 차	대형화물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 자 동 차(일반업 무용)	대형화물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								
특수 자 동 차	이동수리차, 트럭트랙터, 고소작업차 구급차, 진료차, 렉카차, 트레일러,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최단운행연한(「물 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특 수 자 동 차	이동수리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점검·단속 및 순찰 등 특정 업무를 위한 차량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km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고가사다리 차, 굴절사다리 차, 무인방수차 조명차, 배연차, 견인차, 위성중계차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조연차, 유조차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최단운행연한(소방 장비 관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정소차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장비관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 적용
					급수 및 살수차				
					트럭트랙터				
					고소작업차				
					구급차				
					진료차				
					렉카차				
					트레일러				
					점검·단속 및 순찰 등 특정 업무를 위한 차량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 차							
		무인방수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고가차							
		소형사다리 차							
	재난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장비운반차, 지휘차, 순찰차, 트레일러, 구급차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 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다.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제13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종별	차 형 별	분류번호
승용차량	· 대형 승용차	가 1
	· 중형 승용차	가 2
	· 소형 승용차	가 3
	· 경형 승용차	가 4
	· 다목적 승용차	가 5
승합차량	· 대형 승합차	나 1
	· 중형 승합차	나 2
	· 소형 승합차	나 3
	· 경형 승합차	나 4
화물차량	· 대형 화물차	다 1
	· 중형 화물차	다 2
	· 소형 화물차	다 3
	· 경형 화물차	다 4
특수차량	· 특수용도 사용 및 제작된 차량 · 화재진압소방차 · 인명구조소방차 · 예방·점검소방차 · 현장지원보조소방차 · 기타소방차	라 1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재난현장 지원차 행정 및 교육지원차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 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다.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제13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종별	차 형 별	분류번호
승용차량	· 대형 승용차	가 1
	· 중형 승용차	가 2
	· 소형 승용차	가 3
	· 경형 승용차	가 4
	· 다목적 승용차	가 5
승합차량	· 대형 승합차	나 1
	· 중형 승합차	나 2
	· 소형 승합차	나 3
	· 경형 승합차	나 4
화물차량	· 대형 화물차	다 1
	· 중형 화물차	다 2
	· 소형 화물차	다 3
	· 경형 화물차	다 4
특수차량	· 이동수리차	라 1
	· 청소차	라 2
	· 급수 및 살수차	라 3
	· 트랙트렉터	라 4
	· 고소작업차	라 5
	· 구급차	라 6
	· 진료차	라 7
	· 렉카차	라 8
	· 트레일러	라 9
	· 점검·단속 및 순찰 등 특정 업무를 위한 차량	라 10
	· 소방차	라 11

차종별	차 형 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상수도본부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하는 경우

상수도본부 - 다1 - 3

<신 설>

차종별	차 형 별	분류번호
	- 소방펌프차	라 11-1
	- 소방물탱크차	라 11-2
	- 무인방수차	라 11-3
	- 소방화학차	라 11-4
	- 화생방 대응차	라 11-5
	- 소방고가차	라 11-6
	- 소형사다리차	라 11-7
	- 재난지휘차	라 11-8
	- 구조차	라 11-9
	- 구급차	라 11-11
	- 화재조사차	라 11-11
	- 조명배연차	라 11-12
	- 재난현장 지원차	라 11-13
	- 행정 및 교육지원차	라 11-14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1」 서울아리수본부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는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 다1 - 3

「예시2」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번째 구입하는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 가2 - 1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공용차량 운영 현황 공개(제15조제3항 관련)

1. 공용차량 정수 현황

기관명	합계	전용·의전용					다 목 적
		소 계	대 형	중 형	소 형	경 형	

일반업무용(승용)					일반업무용(승합용)				
소계	중형	소형	경형	다목 적	소계	대 형	중형	소 형	경형

일반업무용(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2. 공용차량 보유 현황

기관명	구분	합계	전용·의전용					다 목 적
			소 계	대 형	중 형	소 형	경 형	
	합계							
	구매							
	임차							

일반업무용(승용)				일반업무용(승합용)			
소계	중형	소형	경형	다 목 적	소 계	대 중 형	소 경 형

일반업무용(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3. 전용차량 보유 현황

번호	기관명	배정대상	차명	배기량	구입/	구입/임차
					임차	일자

4. 공용차량 구입 및 처분 현황(1년간)

기관 명	합계	전용·의전용					일반업무용(승용)					
		소 계	대 형	중 형	소 형	경 형	다 목 적	소 계	대 형	중 형	소 형	경 형
	구											
	매											
	임											
	차											
	처											
	분											

일반업무용 (승합용)					일반업무용 (화물용)					특수용				
소	대	중	소	경	소	대	중	소	경	소	대	중	소	경
계	형	형	형	형	계	형	형	형	형	계	형	형	형	형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49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 가. 외부변수의 위험이 상존하는 관광업계를 즉각 지원하고 향후 서울관광의 허브 기능을 할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비용을 적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나.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해 별도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할 예정임에 따라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에서 건물 매입 비용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3조)
나.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에서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 비용을 삭제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관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광정책과(전화: (02) 2133 - 2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E-mail : 2dahyun@seoul.go.kr
(2) 전 화 : (02) 2133 - 2826
(3) 우 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관광정책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 관광산업” 을 “서울특별시 관광산업” 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 을 “2029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해축을 희망하는” 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분의1이상” 을 “3분의1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밖의” 를 “밖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 관광 산업</u>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관광산업</u> ----- ----- ----- -----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4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9년 12월 31일</u> ----- -----. ----- -----.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u>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② <u>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으로 한다.</u>
1. <u>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 비용</u>	
2. <u>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u>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 ----- ----- -----.

1. 위원 스스로 <u>해촉을 희망하</u> <u>는 경우</u> 2. ~ 6. (생 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개최) ① 심 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u>3분의 1이상</u>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③ (생 략) ④ 그 <u>밖</u>의 심의위원회의 개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 <u>직무를 수행하기</u> <u>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u> ---- ----- 2.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심의위원회의 개최) ① -- ----- ----- <u>3분의1 이상</u>-----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밖에</u> ----- ----- ----- -----.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53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두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하나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기금 심의 등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바, 조례를 계정 별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용도 및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 마. 지역교류협력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7~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대외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과(전화: 02-2133-665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
- 2) 팩 스: 02-2133-0820
- 3) 이메일: genhy201@seoul.go.kr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이 조례에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제외)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6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대외협력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임명직 위원 : 소관국장 및 안전 관련 실·본부·국장
2. 위촉위원
 - 가. 지방자치, 지역 간 상생 교류 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 나. 지방자치, 지역 간 상생 교류 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전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

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5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하고,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안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1호의6서식)
- 나.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 여부에 대한 사전의견조사 형식을 개선함(안 별지 제7호서식)
- 다. 그 밖에 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18조제5항, 안 제27조제1항, 안 제35조제3항 및 제6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 : 2133-7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 2) 팩 스: 02-768-8923
- 3) 이메일: sunnyon711@seoul.go.kr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
2.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
3.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4.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
5.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제5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를 “영 제21조제3호”로 한다.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각각 “통보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정한다”를 “배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하되, 중앙행정기관에서”를 “정할 것.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14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14조제2항”으로, “선정 시”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거사업기획관”을 “주택공급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회의개최일 3일”을 “회의 개최 15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는 경우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청내역	신청지역	대표 위치					
		예정 사업명 (구역명)					
		구역면적	(㎡)				
	토지등소유자	총 소유자수	명				
		동의자수	명	동의율	%		
기본사항	상위계획	○○구 ○○주거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검 토 결 과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구역면적 등	정비구역 면적·세대수 등의 적법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등)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노 후 도	노후도 비율의 적합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등)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름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별지 제1호의3서식]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

정비사업 예정 사업명(구역명)	

※ 지적도 등을 이용한 현황도면

[별지 제1호의5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

[illegible]

[별지 제1호의6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00동 00번지 일대 제 00 호
번호부여일자	20 . . .
확인(인)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
		(계 필지)	(계)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 주의사항

- ①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 ②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동의내용 :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를 확인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위 치 (요청 구역)	00동 00번지 일대	구역면적	(㎡)
----------------	-------------	------	-----

상기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 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민 등 록 상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 유 권 현 황 ※ 재개발 사업 대상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			
	건 축 물	()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 유 권 현 황 ※ 재건축 사업 대상	소유권 위치 (주소)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m ²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m ²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② 조합직접설립 동의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		()	
		↳ 둘 중에 한 곳에만 동의 여부 체크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 견을 조사·확인하는 사항임 (이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구역 또는 조합설립인가된 구역이나 조 합 시행방식이 아닌 구역은 동의/반대 기재 불필요)			
		※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② 추진시 생략)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 ※ 조합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 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됨 ※ 조합직접설립 동의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미달될 경우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 업이 추진됨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토지등소유자(성 명) : (지장 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여 주십시오(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다만, 법인이나 장기간 국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할 수 있음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 2.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 3.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4.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 5.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제5조(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5조(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 --- 영 제21조제3호-----

이라 한다) 제21조제3호에 따라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 ④ (생략)

⑤ 공사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잔여주택이 있거나 입주포기·이주 등으로 공가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공사사장은 잔여주택에 대한 우선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사사장으로부터 우선배정 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 구역 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대상 세입자로부터 우선배정 신청을 받아 그 명단을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사사장은 우선배정 신청자가 조례 제46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

제18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 통보할 것

2. -----

통보할 것

3. -----

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되,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오래
경과한 정비구역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4. 우선배정의 순위는 제3호에
따라 공사사장이 결정하되, 공
급 물량이 부족한 경우 동일
한 조건인 때에는 추첨에 의
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공사
사장은 우선배정을 결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잔여주택을 우선배정한 후에
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그
처분방법은 시장이 정하되, 중
앙행정기관에서 특별공급요청
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
7조까지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7조(융자사무의 위탁) ① 시장
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
회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

----- 배정할
것

4. -----

----- 통보할 것

5. -----

----- 정할
것.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융자사무의 위탁) ① 「서
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
례」 제14조제2항-----

라 용자사무를 위탁 받는 금융
기관 등을 선정 시 위탁수수료
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다.

② (생 략)

제3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거
사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
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
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
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
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④·⑤ (생 략)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 선정하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주
택공급기획관-----

-----.

1. ~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⑦ (생 략)

----- 회의 개최 15
일 -----
----- . ----- 사
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이 있는 경우는 ---.

⑦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57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대학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립대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 폐지 및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 기존 사회복지관 업무를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에서 수행

나. 국제교육원 폐지(안 제7조제1항제9호 삭제) 후 국제처 신설

－ 부속기관인 국제교육원을 대학본부 산하 하부조직인 국제처로 확대개편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항 : 국제처

다. 교육혁신원 설립(안 제7조제1항제9호)

－ 기존 자유융합대, 미래혁신원에서 수행하던 교양교육, 글로벌외국어교육, 교수학습개발 관련 업무 전담부서 신설

라. 미래혁신원(안 제7조의2) 폐지 후 관련 업무 기획처로 이관

－ 대학의 기획·평가·대학혁신·성과관리 기능 일원화로 대학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 강화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항 : 기획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jw102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고등교육법」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9. 교육혁신원

제7조의2 중 “인권센터 및 미래혁신원을”을 “인권센터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학칙)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 <u>고등교육법</u> 」 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의2(학칙) ① ----- ----- <u>법</u> <u>제6조</u> ----- ----- ----- -----.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①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1. ~ 4. (생략) <u>5. 사회복지관</u> 6. ~ 8. (생략) <u>9. 국제교육원</u> 10. ~ 12. (생략) ② ~ ④ (생략)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① ----- -----. 1. ~ 4. (현행과 같음) <u>5.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u> 6. ~ 8. (현행과 같음) <u>9. 교육혁신원</u> 10.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직속기관) 대학교에 직속기관으로 <u>인권센터 및 미래혁신원</u> 을 둔다.	제7조의2(직속기관) ----- ----- <u>인권센터</u> 를 -----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 <u>필요한</u>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61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5의3)

- － 일부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 중 ‘고등학교·전문대학 졸업’을 ‘고등학교·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경우’로 개선
- －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 포함)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조문 정비
-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 관리자 근무경력 요구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02)2133-57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 인사과
- 2) 이메일: jkseok77@seoul.go.kr
-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8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 한시임기제	가급/5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급/6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급/7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라급/8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마급/9호	별표 9 및 별표 9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 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자등

※ 비고

1. (삭 제)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9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구 공 고

◆ 서초구공고 제2024-853호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토지보상)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1971. 8. 6.)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4-156(2014. 4. 24.)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서울시고시 제2021-405(2021. 7. 29.)호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번지 일대의 청계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90(2019. 5. 16.)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218(2022. 12. 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3-181호(2023.12.2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2) 명 칭: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
- 3) 내 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 1) 변 경 전: 25,000㎡
- 2) 변 경 후: 7,976㎡
- 3)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 현황 측량에 따른 면적 확정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변 경 전: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4년 5월 13일까지
- 2) 변 경 후: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3) 변경사유: 지적불부합에 따른 지적(현황, 경계) 측량 시일 소요로 당초 사업기간 내 보상 절차 이행 불가로 사업기간 연장

사.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4. 4. 12. ~ 4. 26.)

아. 열람장소: 서초구청(공원녹지과 ☎2155-6870)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참조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 (창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증감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당초	변경							
	계		211,522	25,000	7,976	감17,024						
1	원자등 산4-13	임	211,522	25,000	7,976	감17,0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8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순*	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8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조은*	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8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중*	1/10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